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「파인」 (fine.fss.or.kr)으로 검색하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보 도 자 료 | | |
| | 보도 | 2016. 10. 25.(화) 조간 | 배포 2016. 10. 24.(월) |
| 담당부서 | 보험감리실 | 이창욱 실장(3145-8220), 원희정 팀장(3145-8246)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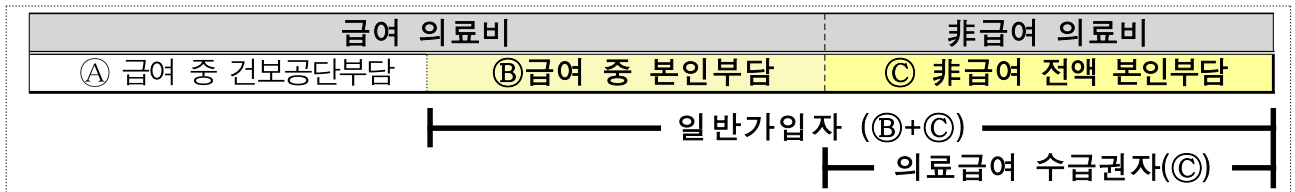
제 목 :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

- ▶ 기존 가입자*가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
* 표준화('09.10월 이후)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함
- ▶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칸을 신설하고 안내를 강화

1. 추진배경

- 「의료급여법」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*는 의료비 중 '비급여부분'만 부담하여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되므로
*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
-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('14.4월)

< 실손의료보험 보상범위 비교 >



- 그러나, 할인 적용대상 한정, 적극적인 안내 부족 등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므로
-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방안을 마련하고자 함

2.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현황

- (개요) 보험사는 '14.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
 -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의 5%*를 할인
 - *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26개 보험사 중 25개 보험사가 보험료의 5%를 할인하고 있으며, 알리안츠생명은 10%를 할인
 - 실손의료보험 가입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가입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할인 가능
- (할인실적) '15년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* 할인이 적용된 계약은 4,643건에 불과
 - * '14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(보건복지부 통계)
 -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금액은 '15년도 기준으로 약 3,700만원

<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실적 >

(단위: 건, 천원)

| 구분 | FY14 | | FY15 | | '16.1/4분기 | |
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
| 생보사 | 647 | 1,882 | 1,191 | 5,581 | 1,003 | 1,801 |
| 손보사 | 1,878 | 8,859 | 3,452 | 31,626 | 3,661 | 10,495 |
| 합계 | 2,525 | 10,741 | 4,643 | 37,207 | 4,664 | 12,296 |

3. 개선방안

1 |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적용 대상 확대

- (문제점) 모든 보험사가 제도도입('14.4월)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'14.4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 할인 미적용
 -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초래

< 민원 사례 >

◆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A씨는 '14.1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'15.1월 해당 계약 갱신시 회사가 발송한 안내장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에 대한 사항을 보고 할인을 요청하였으나,

- 보험사는 '14.4.1.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

→ 가입시기에 따라 할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민원제기

- (개선) '14.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지도

※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상이*하여 표준화 이전 가입자들에게까지 할인을 적용하기는 곤란

- * 표준화 이전 : 발생의료비(건보공단부담분 포함)의 40% 보장
- 표준화 이후 :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80~90% 보장

< '14.4월 이전 계약 할인 적용례 >

-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'14.1월 가입, '15.1월 1차 갱신한 경우
→ '15.1월부터 할인 적용
- ② '14.1월 가입, '14.6월 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, '15.1월 갱신한 경우
→ '15.1월부터 할인 적용
- ③ '14.1월 가입, '15.1월(1차), '16.1월(2차) 갱신, '16.4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→ '16.4월부터 할인 적용

2

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안내 강화

□ (문제점) 보험사는 상품설명서(계약체결시) 및 보험계약관리 안내장(계약체결후)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

○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*

*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('14년말 기준)이나, 할인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4,664건('16.1분기 기준)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동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 받지 못한 계약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

□ (개선) 청약서, 보험금 청구서 등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

① (보험가입시)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할인제도를 설명토록 함

- 청약서(TM스크립트 및 인터넷 가입화면 등 포함)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고,

-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할인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

실손의료보험 청약서 개선(안)

| 현 행 | | | | | | | | | | 개선(안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|--|---------|--|------|--|------|--|--------------|--|-------|--|-----------|--|------|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|-----------|--|---------|--|
| 청 약 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□ 계약자 정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계약자명 | | 계약자번호 | | | | 계약번호 | | | | 주소 | | 만기수익자 | | 연락처 | | 이메일 | | | | | | | | | | | |
| □ 피보험자 정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이름 | | 주민번호 | | 성별/보험나이 | | 연락처 | | 보험기간 | | 직업명 | | 상해금수 | | 주소 | | 차량용도 | | 이륜자동차 탑승여부 | | 사망보험금 수익자 | | 기타보험금 수익자 | | 계약자와 관계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청 약 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□ 계약자 정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계약자명 | | 계약자번호 | | | | 계약번호 | | | | 주소 | | 만기수익자 | | 연락처 | | 이메일 | | | | | | | | | | | |
| □ 피보험자 정보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이름 | | 주민번호 | | 성별/보험나이 | | 연락처 | | 보험기간 | | 직업명 | | 상해금수 | | 의료급여 수급권자 | | 주소 | | 차량용도 | | 이륜자동차 탑승여부 | | 사망보험금 수익자 | | 기타보험금 수익자 | | 계약자와 관계 | |

② (보험금 청구시) 보험금 청구정보 등을 활용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재 안내

-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*를 확인하고,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 할인제도 신청방법을 안내

*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구분에 “보호1종, 의료급여 1종, 급여 1종”등으로 표기

< 진료비영수증 샘플 >

| []외래 []입원 ([]퇴원[]중간)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환자등록번호 | 환자 성명 | | 진료기간 | | 야간(공휴일)진료 | |
| | | |부터까지 | | [] 야간 [] 공휴일 | |
| 진료과목 | 질병군(DRG)번호 | | 병실 | 환자구분 | | 영수증번호(연월-일련번호) |
| | | | | 의료급여 1종 | | |
| 항목 | 급여 | | 비급여 | | 금액산정내용 | |
| | 일부 본인부담 | 전액 본인부담 | 선택 진료료 | 선택 진료료 외 | ⑦ 진료비 총액 (①+②+③+④+⑤) | |
| | 본인부담금 | | | | | |

- 의료비가 소액인 경우 영수증만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* 보험금 청구 양식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여 대상자에게 안내

* 청구금액이 소액(10만원 미만)인 경우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

보험금 청구 양식 개선(안)

| 현 행 | | | | 개선(안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보험금 지급 청구서 | | | | 보험금 지급 청구서 | | | |
| 1.보험계약자 및 인적사항 | | | | 1.보험계약자 및 인적사항 | | | |
| 피보험자 (상해/질병 발생자) | 성명 | | 주민번호 | 피보험자 (상해/질병 발생자) | 성명 | | 주민번호 |
| | 직장명 | | 하는 일 | | 직장명 | | 하는 일 |
| 보험계약자 | 성명 | | 주민번호 | 보험계약자 | 성명 | | 주민번호 |
| ※단체보험 청구시 기재(소속회사 단체보험 담당자로부터 확인) | | | | ※단체보험 청구시 기재(소속회사 단체보험 담당자로부터 확인) | | | |
| 소속회사(단체) 명 | | 계약번호 | | 소속회사(단체) 명 | | 계약번호 | |
| 2.사고접수 및 진행과정, 보험금 지급안내 | | | | 2.사고접수 및 진행과정, 보험금 지급안내 | | | |
| 주요 청구내용 | □입원의료비 □통원의료비 □우유장애/사망 □일당 □비용 □화상/골절/수술 □기타() | | | 주요 청구내용 | □입원의료비 □통원의료비 □우유장애/사망 □일당 □비용 □화상/골절/수술 □기타() | | |
| 안내 받으실 분 | □보험계약자 □피보험자 | | 휴대폰 | 안내 받으실 분 | □보험계약자 □피보험자 | | 휴대폰 |
| | □제3자(성명:) 관계:) | | | | □제3자(성명:) 관계:) | | |

4. 추진계획

- '16.10월 중 각 보험사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방안을 송부하고,
 - 각 보험사별로 청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등을 개정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업무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

5. 기대효과 (국민들이 좋아하는 점)

- 제도도입(14.4월)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함으로써
 - 더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
- 실손의료보험 청약 및 보험금 심사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할인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·안내하도록 함으로써
 - 소비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

① 의료급여 제도
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

※ (근거규정) 「의료급여법」 제2조 1항, 제3조, 제7조, 제10조

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

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

| 1종 | 2종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근로무능력 가구, 희귀난치성질환 중증 질환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 등록자, 시설수급자 ○ 행려환자 ○ 타법적용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재민, 의상자 및 의사자, 입양아동 (18세미만), 국가유공자,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, 북한이탈주민,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, 노숙인 | <p>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</p> |

③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액

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청구분은 병원급에 따라 1천원~ 2천원만 부담(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)

<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>

| 구 분 | | 1차(의원) | 2차 (병원, 종합병원) | 3차 (지정병원) | 약국 | PET 등 |
|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1종 | 입원 | 없음 | 없음 | 없음 | — | 없음 |
| | 외래 | 1,000원 | 1,500원 | 2,000원 | 500원 | 5% |
| 2종 | 입원 | 10% | 10% | 10% | — | 10% |
| | 외래 | 1,000원 | 15% | 15% | 500원 | 15% |